#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최 동 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23-117 발의연월일 : 2023. 10. 13.

발 의 자:최동철, 박학용, 한상욱,

박주선, 정장훈, 김현진,

전철규, 김희동, 강선영

#### 1. 제안이유

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,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나.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다. 위탁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4조, 제4조의2 제20조, 제26조

나. 협조부서 : 가족정책과

다. 입법예고 : 2023. 10. 16. ~ 2023. 10. 20.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·가 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 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이"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.
- 2. "아이돌봄"이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- 3. "아이돌보미"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 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서비스 제공기관"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,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

- 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- 제4조(다른조례와의 관계)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5조(지원계획)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비용지원
  - 2.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
  - 3.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
  - 4.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)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
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8조(위탁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·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」를 따른다.
- 제9조(지도·점검)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사업의 운영, 시설 및설비기준, 안전사고 예방, 종사자 관리,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·점 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붙임 관계 법령

- □「아이돌봄 지원법」
- 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 - 제4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있다.
- 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.
-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,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  - 제26조(비용의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,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